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Ex)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산업기사	굴착기,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사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보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철근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6.07.27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58,438원	1.5억원	42좌 (40,254,396원)	53좌 (50,797,214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